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전남 영암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

1. 관련: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-2309('21.2.5.)호
2.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**종오리**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(H5형 확인)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에 따른 방역조치

□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(공통)

-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, 협회 및 전국 지자체는 AI 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

□ 의사환축 발생 농장 소재 시·도 및 시·군·구(전라남도)

- 검출 농장에 대한 조치
 - 해당 농장의 사육가금 등 고병원성 AI 감수성동물은 즉시 살처분 명령 조치
 - 농장주(가족 및 직원 포함), 차량,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
- 의사환축 발생 농장 및 역학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및 출입자·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후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농식품부·검역본부 및 관련 시·도, 시·군·구에 보고(통보)
 - 역학조사 과정에서 '가금상하차반', '백신접종팀'의 해당 농가 출입(발생일 기준 14일 이내)이 확인되는 경우, 해당 인원과 이용된 차량 관할 소재 지자체에 즉시 통보
 - * 해당 지자체는 '가금상하차반', '백신접종팀'이 의사환축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및 접촉 당시 의복·신발, 차량 등에 대한 세척·소독토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검역본부(방역감시과)로 통보
- 차단방역 강화조치
 - 의사환축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
 - * 해당농장 중심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
→ 닭 등은 간이진단키트 검사, 오리·거위·기러기는 정밀검사(PCR)

- *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
- 3km 방역대 내(관리지역~보호지역)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[붙임 2] 즉시 사전 발부
- 방역대가 타 지자체와 겹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
-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
 - * 시·군,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
- 살처분·매몰 등 현장방역조치 대비 인력 및 장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,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확보
- 방역지역 설정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·검사
 - *를 실시하고,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**
 - * (닭 등) 간이진단키트 검사 / (오리·거위·기러기) 항원검사(PCR)
 - ** 시·군,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료공장은 즉시 세척·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(정밀검사)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
 - * 사료 운송차량의 운전자석 발판, 차량 바퀴 및 머드가드 포함
-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련자 비상대기 조치
-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
-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·도태 추진
-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지도·홍보 철저

□ 전라남도 이외 지자체

- 의사환축 발생 지역 접경 지대는 이동통제 초소 설치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·검사*를 실시하고,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**
 - * (닭 등) 간이진단키트 검사 / (오리·거위·기러기) 항원검사(PCR)
 - ** 시·군,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료공장은 즉시 세척·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(정밀검사)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
 - * 사료 운송차량의 운전자석 발판, 차량 바퀴 및 머드가드 포함
- 의사환축 발생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'가금상하차반', '백신접종팀' 관할 지자체는 '가금상하차반', '백신접종팀'이 의사환축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및 접촉 당시 의복·신발, 차량 등에 대한 세척

- 소독토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검역본부(방역감시과)로 통보
- 관할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
- 관할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전화,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·홍보·점검
 -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·도태 추진
 -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지도·홍보 철저
-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

-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,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의무 위반사항 정밀 조사
 - 역학조사 시 농장 사육환경·방역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부 및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,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자체에 이첩
 -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'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' 결과를 우리 부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여 사전방역 조치에 활용토록 조치
- 중앙기동점검반 점검 실시
 - 의사환축 발생 지역 가금농가의 야생조류 차단, 구서, 살처분 사후 관리, 이동통제초소·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가금농가 소독실태(공동방제단 및 지자체 소독실태 포함)를 상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
- 기동방역기구 파견
 - 대상 지역: **전남 영암군**
 - 주요 임무: 방역기술 지원, 살처분 인력 시 방역 교육, 소독장비 운영, 이동통제초소 설치·운영 및 사체처리 작업 등 기술자문, 현장 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실태 등 점검 및 방역조치 등
- 축산차량 이동현황 및 방역지역 현황 등 보고
-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철저(비상연락망 구축 등)

□ 보건복지부(질병관리청)

- 「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」에 따라 방역 인력 및 물자(항바이러스제 공급 등)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

□ 국방부·경찰청

- 시·군·구에서 현장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

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-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의 농장 밖 이동을 금지하고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진입 제한
 -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·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, 부득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·기록 관리 철저

-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진입로 소독(생석회 살포 등)
- 의사환축 발생 지자체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
 - * 검출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가는 '21.2.5.(금)까지 전화예찰을 완료하고,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실시

□ 농협경제지주

- 의사환축 발생지역 내 가금농가 소독 실시(공동방제단)
 -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, 의사환축 발생 시군 내 모든 가금농가로 확대하여 실시

□ 관련 협회(단체 포함) 및 소속 농가

- 중앙 및 지방정부, 관련 단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
 -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가금 사료 확보 등 대비 철저 홍보
-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, 행사 등 금지
-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(1588-4060, 9060)토록 전파
-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및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 적극 협조 홍보
-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 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

나. 추가 방역강화 조치사항

□ 의사환축 발생지역(시·군·구) 관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

- 기간: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
- 대상: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
 - ※ 해당 지자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서 발부

□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(100수 미만 방사사육 등) 가금 구매·도태 적극 실시

- 붙임 1. 관련 공문 1부
 2.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(양식; 준수사항 포함) 1부. 끝.

